



: 2018-08-22

## 울 산 지 방 법 원

### 제 1 행 정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6구합6539 취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 
원 고 에프유 주식회사  
피 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
변 론 종 결 2017. 6. 22.  
판 결 선 고 2017. 8. 10.

### 주 문

1. 피고가 2015. 2. 23.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465,928,300원 및 지방교육세 46,592,830원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, 2016. 12. 12.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79,365,770원 및 지방교육세 27,936,570원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

## 이 유

### 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126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.

나. 세진이노테크 주식회사(이하 '세진이노테크'라고 한다)는 2010. 7. 30.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북구 소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내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9,796.4㎡,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5,534.6㎡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. 그 후 세진이노테크는 위 토지의 일부에 연면적 8,104.019㎡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. 1. 28. 공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. 세진이노테크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.

다. 위 나.항의 각 토지 위에 세진이노테크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면적 5,002.52㎡의 공장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이 신축되어 2014. 5. 2. 사용승인을 받았다. 세진이노테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.

라. 2014. 7. 30.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9,796.4㎡가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1,799.6㎡와 울산 북구 효문동 981-1 공장용지 7996.8㎡로 분할되었고,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5,534.6㎡가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1198.6㎡와 울산 북구 연암동 1394-1 공장용지 4336㎡로 분할되었다.

마. 원고는 2014. 8. 11. 세진이노테크로부터 이 사건 건물, 울산 북구 효문동 981-1 공장용지 7996.8㎡(이하 '효문동 981-1 토지'라고 한다),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1198.6㎡(이하 '연암동 1394 토지'라고 하고, 효문동 981-1 토지와 합쳐서 '이 사건 토지'라고 하며,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서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



한다)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2014. 9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.

바. 원고는 2014. 9. 5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745,294,070원, 농어촌특별세 37,264,700원, 지방교육세 74,529,400원(이하 '취득세 등'이라고 한다) 합계 857,088,1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.

사. 원고는 2014. 10. 28. 울산광역시와 '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21,502.52 m<sup>2</sup>의 제조시설 등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.

아. 원고는 2014. 12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연면적 23,224.8m<sup>2</sup> 규모의 건물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, 완공한 후 2016. 8. 19. 보존등기를 마쳤다.

자. 원고는 2014. 12. 29. 위와 같은 건물 증축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연암동 1394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 476m<sup>2</sup>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,772.6m<sup>2</sup>에 대한 취득세 465,928,300원 및 지방교육세 46,592,830원 합계 512,521,130원<sup>1)</sup>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2015. 2. 23. '원고가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' 이를 거부하였다.

차. 이에 원고가 2015. 5. 14. 감사원에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, 감사원은 2016. 8. 25.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.

카. 원고는 2016. 10. 17. 위 자.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, 효문동 981-1 토지, 연암동 1394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476m<sup>2</sup> 부분에 대한 취득세

1) 원고는 502,224,80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, 위 금액이 계산상 오류라면서 피고가 바로잡은 금액이 512,521,130원이다.



279,365,770원 및 지방교육세 27,936,570원 합계 307,302,34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2016. 12. 12.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(위 자.항의 거부처분과 합쳐서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하였다.

[인정 근거],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3, 16, 17, 19, 20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8조 제4항의 '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'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### 나. 판단

1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가. 나.목에서 '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산업단지와 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유치지역을 들고 있고, 제2호 가.목에서 '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

2) 위 인정 사실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



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.목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.목은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'취득'하는 '부동산'으로 규정하고 있다.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'취득'이란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·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,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'부동산'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바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가.목이 규정한 '부동산'이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거나, '취득'의 경우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.

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,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, 최초 분양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이 부당하게 거듭될 우려도 없다.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세진이노테크는 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였다.



④ 원고가 세진이노테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 사건 토지는 세진이노테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고도가 5m가량 차이 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만이 존재하였을 뿐이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세진이노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실제 상당한 규모로 공장을 증축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, 이로써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.

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. 이 사건 건물은 세진이노테크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이는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세진이노테크였기 때문이고, 그 당시부터 원고와 세진이노테크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있었고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⑥ 원고가 세진이노테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가 관련 법령 규정의 해석상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김태규



.  
.  
: 2018-08-22

판사 정우철

판사 권순범